

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	1996.
제출자	구미시장

1. 의결주문

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사유

- '91. 12. 7개관이후 사용료 조정없이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, 전국 도단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와 형평이 맞지 않음은 물론, 시내 유사 체육관과 본기념관과의 요금차이로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 사용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.
- 체육행사의 정의(신설) : 체육경기, 체육행사, 체육행사 이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러 함.
- 예식행사(신설) :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면증을 위해 실비(90,000원이하)만을 받고 장소를 제공하면서 세입을 중대하려는 것임.
- 기 타 : 1일 사용단위인 강의실, 전시실등은 소극장과 같이 4시간 단위 사용으로 통일시켜 균형을 이루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 조정.
- 종목신설 및 체육경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

4. 개정내용 : 붙임

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제 8 조 제13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13. “체육행사”라함은 체육경기 이외의 순수 체육활동 만을 말한다.
이때의 “체육경기”라 함은 공인체육경기, 국제경기,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.

제 16 조 제2항중 “전용사용,개인사용”을 “개인사용,전용사용”으로 한다.

[별표1] [별표3]을 별시와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'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 별표 1 】

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

○ 개인 사용료

시 설 명	사용일수	어린이	청소년·군인	성 인	노 인	비 고
	월(월~토)	28,000	34,000	40,000	28,000	
수영장	1 일	2,000	2,200	2,500	2,000	월이용료는 지도자 수강 료 포함임.
헬스장	월(월~토)		30,000	30,000	20,000	
에어로빅	월(월~토)	20,000	25,000	25,000	20,000	

※ 단, 수영장 사용료의 체육진흥기금은 별도임.

※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, 문화,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도 산정한다.

○ 전용 사용료

구 분	사용 목적	단 위	요 금			비 고
			평 일	토·일	공휴일	
체 육 관	체 육 경 기	주 간	30,000	40,000		
		야 간	40,000	50,000		
	체 육 행 사	주 간	90,000	120,000		
		야 간	120,000	150,000		
	체 육 행 사 이 외	주 간	120,000	150,000		
		야 간	150,000	180,000		
소 극 장	공연, 발표, 교육, 행사	4시간 이내	40,000	50,000		
	예식 행사	2시간 이내	70,000	90,000		
강 의 실	발표, 교육, 행사	m ² 당/4시간 이내	100	120		
전 시 실	전 시	m ² 당/4시간 이내	100	120		

※ 주간 사용은 일출시부터 일몰전까지 8시간 이내임.

※ 야간사용은 — 하계 : 19:00 ~ 22:00

— 동계 : 17:00 ~ 21:00

【 별표 3 】

○ 부대시설 사용료

시 설 명		단위	사용료	비 고
피 아 노	일반행사	1 회	20,000	○1회는 4시간 이내로함. ○피아노 연주자는 행사 주최 측에서준비(신설)
	예식행사	1 회	10,000	
무 대 조 명		시간당	20,000	○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○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안의 50%로 함.
음 향 시 설	음향반사판	1 회	20,000	
	녹 음	1 회	30,000	○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안의 50%로 함.
	카세트테이프	1 회	10,000	
영 사 기	70m/m	시간당	40,000	○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무대 조명을 무료로 함.
	30m/m	시간당	20,000	
	16m/m	시간당	10,000	
드라이아이 스기		1 회	10,000	○영화상영만을 위한 대관시 영사기료 면제
스 모 스 키		1 회	10,000	

○ 국민생활관 기본 및 부대시설 초과사용시 사용료 징수액

구 분	사 용 료 징 수
전용 사용시	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
연습 사용시	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5할 가산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형	형	개	정
제 8 조 (정의) (생 략)		제 8 조 (정의) (현행과 같음)	
1~12 (생 략)		1~12 (현행과 같음)	
(신설)		13. “체육행사”라 함은 체육경기 이외의 순수 체육활동 만을 말한다. 이때의 “체육경기”라 함은 공인 체육경기, 국제 경기,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 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.	
제 16 조 (사용료) ① (생 략)		제 16 조 (사용료) ①(현행과 같음)	
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 사용, 개인사용 등으로 구분 하여 정한다.		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개인 사용, 전용사용 등으로 구분 하여 정한다.	
③ (생략)		③ (현행과 같음)	

【별표 1】

국민생활관사용료징수용율표

○ 전용사용료

구 분	사용 목적	난 위	요 금 (원)		비 고
			평 일	토·일·공휴일	
체육관	체 육 경 기	주 간	30,000	40,000	
		야 간	40,000	50,000	
	체 육 경 기 이 외	주 간	90,000	120,000	
		야 간	120,000	180,000	
소극장	공연, 발표, 교육, 행사	4시간 이내	30,000	45,000	
강의실	발표, 교육, 행사	m ² /일	80	100	
전시실	전 시	m ² /일	100	120	

○ 개인사용료

(요금단위:원)

시설명	사용일수	어린이	청소년·군인	성인	노인	비 고
수영장	월(월~토)	20,000	25,000	30,000	20,000	
	1일 (평일)	1,400	1,600	2,000	1,400	
	1일 (휴일)	1,200	1,400	1,800	1,200	월이용료는
헬스장 (남)	월(월~토)		20,000	20,000	14,000	지도자 수강 료 포함임.
에어로 빅(여)	월(월~토)	18,000	20,000	20,000	18,000	

※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, 문화, 청소년프로
그램 등의 수강료는 별도 산정한다.

개 정 안

【별표 1】

국민생활관사용료정수요율표

○ 개인사용료

(요금단위:원)

시 설 명	사용일수	이런이	청소년·군인	성인	노인	비 고
수영장	월(월~토)	28,000	34,000	40,000	28,000	월이용료는 지도자 수강료 포함임.
	1 일(평일) (휴일)	2,000	2,200	2,500	2,000	
헬스장	월(월~토)	20,000	30,000	30,000	20,000	
에어로빅	월(월~토)	20,000	25,000	25,000	20,000	

※ 단, 수영장 사용료의 체육진흥기금은 별도임.

※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, 문화,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도 산정한다.

○ 전용사용료

구 분	사용 목적	단 위	요 금 (원)			비고
			평 일	토 일	공휴일	
체육관	체 육 경 기	주 간	30,000	40,000		
		야 간	40,000	50,000		
	체 육 행 사	주 간	90,000	120,000		신설
		야 간	120,000	150,000		신설
	체 육 행 사 이 외	주 간	120,000	150,000		
		야 간	150,000	180,000		
소극장	공연, 발표, 교육, 행사	4시간 이내	40,000	50,000		
	예식 행사	2시간 이내	70,000	90,000		신설
강의실	발표, 교육, 행사	m ² 당/4시간 이내	100	120		
전시실 전	사	m ² 당/4시간 이내	100	120		

※주간사용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8시간 이내임.

※야간사용은 ☐ 동절기 17:00 ~ 21:00

☐ 하절기 18:00 ~ 22:00

【별표 3】

○ 국민생활관 기본 및 부대시설 초과사용시 사용료 징수액

구	분	사 용 료 징 수
전 용 사 용 시		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가산
연 습 사 용 시		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5할가산

○ 부대시설 사용료

(요금단위:원)

시 설 명	단위	사용료	비 고
피 아 노	대 형	1 회 30,000	○ 1회당 오전,오후,야간중 하나를 지칭.
	소 형	1 회 20,000	
무 대 조 명	시간당	20,000	○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
음 향 시 설	음향반사판	1 회 20,000	○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안의 50%로 함.
	녹 음	1 회 30,000	
	·릴	1 회 10,000	
영 사 기	·카세트테이프	1 회 10,000	○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무대조명을 무료로 함.
	70m/m	시간당 40,000	
	30m/m	시간당 20,000	
드라이아이스 기	16m/m	시간당 10,000	○ 영화상영만을 위한 대관시 영사기로 면제
	1 회	10,000	
스 포 스 키	1 회	10,000	

개 정 안

【별표 3】

○ 부대시설 사용료

(요금단위:원)

사 설 명		단위	사용료	비 고
피아노	일반행사	1 회	20,000	○ 1회는 4시간 이내로 함. ○ 피아노 연주자는 행사주최측에서 준비
	예식행사	1 회	10,000	
무 대 조 명		시간당	20,000	
음 향 시 설	음향반사판	1 회	20,000	○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○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안의 50%로 함.
	녹음	1 회	30,000	
	·릴 ·카세트테이프	1 회	10,000	
영 사 기	70m/m	시간당	40,000	○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무대조명을 무료로 함.
	30m/m	시간당	20,000	
	16m/m	시간당	10,000	
드라이아이스기		1 회	10,000	○ 영화상영만을 위한 대관시 영사기로 면세
스 모 스 키		1 회	10,000	

○ 국민생활관 기본 및 부대시설 초과사용시 사용료 징수액

구 분	사 용 료 징 수
전 용 사 용 시	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가산
연 습 사 용 시	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5할가산